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7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5.

발 의 자 : 조승래 · 민형배 · 채현일
김 윤 · 박상혁 · 이정문
진선미 · 황정아 · 조계원
최혁진 · 박용갑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「국회법」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. 또한,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.

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,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·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46조 등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”를 “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·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운영”을 “구성과 운영”으로 한다.

-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,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9조의2제3항 중 “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”를 “특별위원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6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의원의 자격심사·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<u>제44조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<u>운영</u>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	제46조(윤리특별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윤리특별위원회</u> 를 둔다. ② <u>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⑤ <u>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,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 ⑥ ----- <u>구성과 운영</u> ----- ----- ----- 제49조의2(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) ①·② (생 략)
제49조의2(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) ①·② (생 략)	제49조의2(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국회운영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,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57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)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(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-----

-----특별위원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의-----
-----.

제157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) ① -----

-----<단서 삭제>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